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14 | December 2023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법인세법

3

- [판례]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총당금이 분할에 따라 총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 [판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 (국승)
- [심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

- [예규]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 [예규]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10

- [예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 [예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11

- [심판례] 외관상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개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 여부 (취소)

부가가치세법

13

- [심판례]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Contents

Page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 [판례]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부 납세자승)
- [심판례]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세기본법

16

-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납세자승)
- [판례]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국승)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국승)
- [심판례]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

지방세법

21

- [판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국승)
- [심판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2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경정)
- [심판례] 제①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과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합병 관련 승계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예규] 버추얼 휴먼·VFX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25

- [심판례] 청구법인이 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세법

[판례]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총당금이 분할에 따라 총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0두56803 판결

[사안] 원고는 2006. 9. 28. A사를 인수하여 법인 상호를 B마트로 변경하였고, 2008. 12. 29.을 합병기일로 하여 B마트를 흡수합병(“이 사건 합병”)하였음.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1, 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 2, 4항에 따라 압축기장총당금, 일시상각총당금(이 두 가지 총당금을 합하여 “이 사건 총당금”)을 각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합병으로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였음. 그 후 원고는 2011. 5.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 방식으로 대형마트 사업부분을 분리하고 C마트를 분할·신설하였고(“이 사건 분할”), C마트는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총당금 중 압축기장총당금 전체와 일시상각총당금 잔액(“이 사건 총당금 잔액”)을 원고로부터 승계받았음. 피고는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C마트가 이 사건 총당금 잔액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총당금 잔액을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약설(略說)]

- 개정 후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적격합병 후 분할의 경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하되, 그 분할이 적격분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됨(부칙(2009. 12. 31. 법률 제9898호) 제6조).
- 결국 대법판결은 위 개정 규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셈임.

[판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 (국승)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사안] 원고보조참가인 甲과 소외 乙은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지분을 49:51로 나누었고, 甲이 조성사업의 대상이 될 자기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매도하되 저가(시가의 51%)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乙이 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계약"). 한편, 甲과 乙,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乙 등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甲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함. 乙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총당되고 남은 잔액 약 127억 원("이 사건 수령금")이 신탁계약상 채무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수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판단] [이 사건 수령금 중 49%부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甲이 장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령금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매각대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이 사건 수령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를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수령금 중 51%부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비록 사법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이 현실로 수령한 이 사건 수령금을 甲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 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 상당의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음.

[약설(略說)]

•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각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함.

[이 사건 수령금 중 49%부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상법상 납입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자의 납입에 준하는 경우까지 널리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단지 장래 현물출자를 예정하였다가 다른 경위로 출자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변형되어 법인에 귀속된 금전도 출자의 납입에 준하여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 사건 수령금 중 51%부분] 이 사건 수령금 중 51%가 甲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1서3720, 2023. 10. 26.

[사안]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 및 보험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2019사업연도에 해외 채권 및 해외 ETF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공제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책임준비금 이자가 국외원천소득(투자수익)에 대응되는지 여부를 보면,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보험업 감독규정이나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규정 및 산식상 책임준비금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의 준부 또는 증감과는 무관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부적인 손익분석을 위해 책임준비금 이자를 투자 손익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감독규정 등을 근거로 책임준비금 이자를 법인세법상 국외원천소득과 대응 관계에 있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 2022. 1. 25.)는 같은 취지로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이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산정과 관련한 예규(국제조세제도과-462, 2012. 9. 24.)에서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 면제소득에서 공제되는 관련 손금에 책임준비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대상심판례와 달리, 기존 과세전적부심 결정례는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적부2020-94, 2020. 12. 23.).

[심판례]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2서7688, 2023. 11. 16.

[사안]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 중개 및 대리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로서 2016. 1. 12.~2019. 7. 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A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위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규정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하여 2016~2019사업연도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쟁점비용”)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일지라도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참조),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다른 경쟁사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인 점, 또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수수료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 2021. 8. 24.).

[심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2서8051, 2023. 11. 23.

[사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은 A사의 지분 59.15%를 보유하던 중 2020. 1. 28.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A사의 잔여지분 40.85%(기타주주 보유지분 28.85%와 자기주식 12%)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가로 자기주식과 신주를 교부하고, 그와 관련된 손익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인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규정하면서 그 금액을 “「상법」 제360조의 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0조의 7 제1항에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교환교부금’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계산산식(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교환교부금-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만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면 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약설(略說)]

- 국세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 2020. 12. 29.).

[예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사전-2023-법규법인-0808, 2023. 12. 6.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후단의 경우로 한정)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약설(略說)]

- 대상예규는 동일사업 판정(70%초과 여부 판단)시 “동일사업”의 판단을 ①하나의 사업(세분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②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세분류상 동일한 사업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정세법 해설[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 2006.06)]은 동일사업 전부의 사업용고정자산 비율을 합산하여 동일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

국의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클라우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약설(略說)]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됨.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 한편,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음(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3. 6. 1.).

[예규]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 11. 14.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약설(略說)]

-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 제1호에서는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이를 다시 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 발간 202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해외지주회사’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지주회사’로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예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서면-2023-법인-3581, 2023. 11. 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2020. 12. 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약설(略說)]

- 대상예규는 질의법인의 경우 2018~2021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부칙이 적용됨에 따라 ①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와 ② 실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즉, 가령, 2018~2021과세연도까지 4년 동안 매년 각 5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22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2018과세연도를 제외한 2019~2021과세연도를 말함) 연평균 투자금액은 ①의 경우 200억 원 $\{=(0\text{원}+0\text{원}+200\text{억 원})/3\text{년}\}$ 으로 산정되는 반면, ②의 경우 150억 원 $\{=(50\text{억 원}+50\text{억 원}+50\text{억 원})/3\text{년}\}$ 으로 산정됨.
- 따라서, 위 부칙이 적용되어 2021과세연도 공제액 산정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금액 계산 시(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낮게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②방식이 ①방식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함.

[예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인-2948, 2023. 11. 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임.

[약설(略說)]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 특정시설(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경우 건축물 등을 제외하지 않고 법 소정의 시설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세청은 환경보전시설(서면2팀-1562, 2005. 9. 27., 서면2팀-558, 2006. 3. 26.), 에너지절약시설(서면2팀-1415, 2006. 7. 2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법규법인 2011-0466, 2011. 12. 8.)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특정시설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소득세법

[심판례] 외관상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3부0831, 2023. 11. 21.

[사안] 청구인은 2015. 6. 11. 127,339㎡ 중 114,60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9. 21.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A사(“쟁점①법인”)에 71,630㎡를, 역시 특수관계법인인 B사(“쟁점②법인”, 쟁점①법인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에 23,140㎡를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이후 쟁점①법인은 위 취득한 토지 중 48,579㎡(“쟁점토지”)를 2017. 1. 16. 특수관계 없는 3인(C사, D사, E사,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지 결손법인인 쟁점①법인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우회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제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에서 쟁점①법인을 중간에 개입시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양도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조심 2022인 1445, 2022. 8. 19. 등,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쟁점①법인에 양도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인 쟁점①법인을 회생시키고 동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 선택을 조세회피목적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①법인을 회생시키고자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감정가격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시인하고 있고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을 통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①법인의 거래는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는 등으로 하여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세법이 정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방법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쟁점①법인을 회생시키고자 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①법인은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이전받았고 매수법인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청구인의 양도대금과 미수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①법인을 중간에 형식적으로 개입시키고 실제로는 매수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했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임(조심 2022부6403, 2023. 10. 20., 조심 2022서6891, 2023. 6. 9. 등).

[심판례]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캐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3서7467, 2023. 11. 27.

[사안] 청구법인은 배달대행플랫폼을 통해 운수 및 사업서비스(배달서비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상점, 배달기사 등에 대해 상호 수수하는 금원의 정산편의를 위해 시스템 내 사이버 머니인 '*캐시'를 개발하였음. 이에 배달기사들이 배달구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배달완료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배달수수료가 *캐시로 적립되고, 각 배달기사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캐시를 본인들의 금융계좌로 출금할 수 있음. 청구법인은 배달기사가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을 완료하는 시점에 배달수수료를 *캐시로 지급하였는바, 해당 시점을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로 보았는데,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을 넘는 경우는 없어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수수료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국제기본법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12월~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청구법인은 배달기사들에게 배달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그 대가로 배달구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배달건별로 *캐시를 지급하고 있는바, *캐시는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한 교환수수료나 사용기간, 환가조건 없이 1포인트가 현금 1원으로 교환되고, 시스템 안에서는 배달기사들이 *캐시로 이륜차 렌탈료를 결제한다거나 다른 배달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배달기사들이 *캐시를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은 '모계좌'에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함에 따라 용역제공에 대한 변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한편,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 경우 배달기사들이 *캐시를 현금으로 이체하는 시점에 따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시기가 달라지고, 배달기사들이 *캐시를 이륜차 렌탈료로 결제하거나 다른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캐시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함.

[약설(略說)]

- *캐시는 청구법인의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되어 전자화폐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것이 아닐지라도, 현금화 과정에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수수료가 없고, 시스템 사용자 간 증여나 결제가 가능한바, 결국 대상심판례는 위 캐시를 실질적으로 현금 등가물로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심판례]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3서7479, 2023. 10. 5.

[사안] 청구법인은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웨딩사업부를 통하여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등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의 꽃장식(“쟁점꽃장식”)을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꽃장식이 면세재화인 생화(生花)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쟁점꽃장식에 대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꽃장식은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꽃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의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지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부수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할 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쟁점꽃장식과 그 외의 결혼예식용역 모두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점, 일반적으로 결혼예식용역에서 예식장을 꾸미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꽃장식이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예식용역을 공급받는 고객들은 생화인 꽃 자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닌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을 사용하는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쟁점꽃장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여 장식하는 행위가 쟁점꽃장식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꽃장식의 공급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약상 의무는 꽃을 고객에게 단순히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꽃을 가공·배치하여 예식장을 장식하는 역무의 제공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이 끝난 후 쟁점꽃장식에 사용된 생화를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결혼예식용역이라는 쟁점꽃장식의 사용목적의 달성된 후 불필요해진 쟁점꽃장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약설(略說)]

- 생화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함(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서면-2016-부가-6265, 2017. 3. 27. 등).
- 한편,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과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0932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사안] A사는 2009.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1이 A사의 전체 발행주식 20,000주 중 51%인 10,2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A사에 대하여는 2014. 1. 28.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음. B사는 2009. 12. 31. 기준으로 B사의 전체 발행주식 20,000주 중 A사가 48.5%인 9,700주, 원고 1이 약 33.3%인 6,670주, B사의 임원이던 소외인이 약 16.6%인 3,33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소외인은 2010. 10. 28. A사로부터 B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으로 B주식 6,000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친족으로, 원고들은 2010. 10. 28.부터 2011. 12. 2.까지 사이에 A사·소외인 등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B사 주식("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2013. 7. 1.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2014. 12.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장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 5. 2.과 2017. 7. 12. 및 2017. 7. 19.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3 제1항과 제4항이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을 주식의 상장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항은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2013. 2. 22. 규정 제893호로 개정된 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2013. 9. 11. 규정 제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코스닥시장의 하나로 코넥스시장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2013. 7. 1.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2013. 9. 17.에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3 제1항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함.

[약설(略說)]

- 대상판결은 구 상속세법상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때'가 아니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때'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심판례]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부5581, 2023. 11. 2.

[사안] 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A사는 2008. 8. 7. 휴양형 주상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이 사건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설립당시 청구법인이 A사의 발행주식(총 15,387,429주)의 19%인 2,923,500주를 보유하고, 청구법인은 2020. 8. 27. B사의 자회사인 “BLCL” 및 “SSP”로부터 A사 발행주식의 나머지 81%인 12,463,929주(“쟁점주식”)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 1. 15.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액 전액을 감액할 것을 구하는 행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에 따라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토지만을 제외하고 협의매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협의취득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무효인 이상 청구법인의 A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계약 역시 이행불능으로 해제가능하며, 실제 청구법인이 2020. 6. 30.자 조정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당초 이 사건 사업부지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한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A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A사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2020. 6. 30.자 조정결정에 따라 BLCL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2020. 8. 27. BLCL 및 SSP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재인가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무효로 판단된 이 사건 사업과 별개인 새로운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이루어진 수용, 협의취득 및 이에 따른 A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 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증여세 행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전제가 된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물권행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함.
- 대상심판례의 사안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A사 명의로 해당할지라도, 대법원이 원소유자와 청구법인 간 협의취득을 무효라 판단한 이상(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5118 판결) A사 명의로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그 소유권자는 A사가 아닌 원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사안] 원고는 캐나다 소재 A사와 합작투자계약(“쟁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인 소외 법인을 설립한 다음,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소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출자양도계약(“쟁점 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였음. 한편 원고와 A사는 우선주약정을 체결하여 소외 법인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이 각각 4,8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경우,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환매대가를 지급하여 우선주 2주를 소각하고, 그와 동시에 A사에 새로운 우선주 2주를 발행하도록 정하는 계약(“쟁점 우선주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양도대금 이외에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금으로 약 797억 7,400만 원(“쟁점 금원”)이 지급되었음. 원고는 쟁점 금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 금원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였으나, 피고는 쟁점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함.

[판단]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네트워크 사업 일체를 소외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소외 법인의 주식 등을 지급 받았으며, 사후 정산 조항에 따라 사업양도 이후 양도대금 일부를 소외 법인에 반환한 반면, 쟁점 금원은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되었고,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쟁점 투자계약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와 A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A사는 자회사인 소외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A사로서는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고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양도 이후에도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바, 쟁점 우선주약정은 그러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 우선주약정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영업권을 포함한 네트워크 사업 일체를 소외 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은 회계법인의 영업자산 가치평가액 2,881억 5,600만 원 및 해당 영업자산의 장부가액 2,758억 9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위 가치평가액과 장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사업양도대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금원은 원고가 출자한 소외 법인으로 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으로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임.

[약설(略說)]

- 원심은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쟁점 우선주약정에 따라 우선주 유상감자의 대가 명목으로 소외 법인으로 부터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쟁점 금원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 한편, 1심은 대법원과 같이 쟁점금원을 수입배당금으로 보았음(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판례]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사안] 서울지방법국세청장은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2015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한 다음 원고가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에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해외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손금에 잘못 산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9. 13.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음(“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를 감액경정·고지하였음(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한편, 서울지방법국세청장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에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해외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 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9. 26. 원고에게 벌금상당액을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가 2016. 10. 10. 납부액을 변경하였음(“이 사건 통고처분”).

[판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이 된 해당 조세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하여 미치고,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납세자가 받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그 일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고발장 또는 통고서에 기재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미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7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에 따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문언이 이 사건 예외조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그 개정취지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원심과 같이 이 사건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수 개의 조세범칙행위 중 일부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관련된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예외조항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점 등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예외조항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약설(略說)]

- 원심은 국세기본법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와 같이 납세자가 조세포탈 등을 통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세부과·징수권의 확보 및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납세자가 사전적으로 다뤄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외적으로 박탈한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 점,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과세처분에 대해서 다룰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고처분하는 그 세액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 대상판결은 통고처분의 효력 범위를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리를 차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판례]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가능한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50233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A사 및 B사(두 회사를 통칭하여 “쟁점법인들”)에 신탁사인 C투자증권을 통해 2014년 출자하고, 2016년 내지 2018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잔여재산 분배금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12.부터 2019. 3. 15.까지 청산종결 등기된 쟁점법인들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법인들의 청산인들이 속한 D사와 E사는 2019. 4. 30. 추가법인세를 우선 납부한 후 2019. 7. 11. 원고를 포함한 쟁점법인들의 주주들에게 각 출자비율대로 금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2019. 9. 18.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함으로써 당초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는 PFV와 같은 특수목적회사가 원칙적으로 과세 가능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설비투자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이 얻은 소득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조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법인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와 적용 요건,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과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법인세 등이 부과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법령상 근거 없이 당연히 출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가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여야 이중과세방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도 어려움.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쟁점법인들에 출자하였다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들은 명목상의 회사로서 추가 법인세 등의 부과 당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쟁점법인들의 청산인들이 속한 D사와 E사가 추가 법인세 등을 스스로 먼저 납부한 점, 이후 쟁점법인들의 청산인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8조를 근거로 들면서 주주들에게 납부한 추가 법인세 등 중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공문을 그대로 전달받아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추가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잔여재산 분배금 중 일부 반환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금은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사실상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배당금 내지 잔여재산 분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약설(略說)]

- 피고의 과세논리는 원고가 부담한 추가법인세는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배당금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본 것임.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사안]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A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45,100주(“상속주식”)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세무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속주식 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대금 및 저가매수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 피고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원고로부터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 하였고,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음.

[판단]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점(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원고 측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약설(略說)]

-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판결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대상판결과 동일하게 실시하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조세범칙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심판례]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중6855, 2023. 12. 4.

[사안] 청구인은 A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A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쟁점스톡옵션”)를 2013. 2. 14.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주식 양도로 보아 2014. 6. 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21. 4. 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청구인이 비록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2011년에 합병 후 스톡옵션의 취득 등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식수와 발행법인 등 그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에 합병 후 스톡옵션을 당초 최초 스톡옵션의 실현으로 보아 신고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합병 후 스톡옵션 중 쟁점스톡옵션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쟁점스톡옵션의 양도에 따른 수령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 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쟁점스톡옵션의 권리행사 시 해외모법인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취득과 동시에 이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납세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2011년 쟁점스톡옵션을 포함한 합병 후 스톡옵션의 취득을 최초 스톡옵션의 실현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하여 2013년에 쟁점스톡옵션을 권리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였고, 쟁점스톡옵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동시에 양도되어 동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착오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발생소득에 과세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와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조세심판원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단순 소득구분의 착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 바 있음(조심 2014광2439, 2014. 12. 26., 조심 2017광2575, 2017. 9. 20. 등).

지방세법

[판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국승)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사안]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사건 연구비 등”)을 지출하였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09~2013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최저한세액 제한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해당 연도 동안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 사건 개정”,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음(“이 사건 경과규정”).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약설(略說)]

-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안에서도 위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 2023두38516 판결 등).

[심판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2 제1항의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경정)

조심 2022지0800, 2023. 10. 23.

[사안] 청구법인은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용 건축물(“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7. 2. 1.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특법”) 제180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47조의 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쟁점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종과세율 적용 배제와 쟁점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복 감면받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2. 1. 12. 청구법인에게 쟁점감면에 따른 취득세 및 종과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함.

[판단] 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종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감면규정과 구 지특법 제18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과세율 배제는 모두 같은 법 제180조 본문에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180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중복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취득세 세액감면과 종과세율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 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종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 지특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구 지특법 제18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과세율 배제는 일반세율에 종과세율이 더해져서 세액을 산출할 사안에서 특례로 종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세율만 적용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일종에 해당하나, 그 특례의 방식이 농어촌특별세법(“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과는 다른 특례에 해당하고, 농특세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배제를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부과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농특세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부과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취득세 종과세율 배제 특례를 농특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그 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 받더라도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던 점, 농특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11. 1. 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종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통합 전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면서 당시 농특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을 농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한 반면 종과세율 배제와 관련한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 12. 31. 종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농특세법에서는 종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 지특법 제18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기존에 기재부도 지특법 제180조의 2 제1항에 따른 종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 10. 18.).

[심판례] 제①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과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합병 관련 승계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지3829, 2023. 10. 19.

[사안] A사(“제①종전법인”)는 2016. 5. 31.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B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에 대한 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B사는 2016. 5. 31. 그 법인명을 C사로 변경하였음. D사(“제②종전법인”, 제①종전법인과 합하여 “종전법인들”)는 2017. 7. 1.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방위사업부분을 물적분할(“이 건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19. 1. 1. C사(“피합병법인”)와 합병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합병과 동시에 해산하였으며, 제②종전법인은 2019. 1. 1. 그 법인명을 E사(“청구법인”)로 변경하였음. 청구법인은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할 당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업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지방교육세(“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9. 5. 31.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 납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제①종전법인이 2017. 7. 1. 제②종전법인으로 이 건 물적분할을 할 당시의 회사분할 결정 공시에 따르면, 제①종전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 후 제②종전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되어 양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되었고, 피합병법인이 제②종전법인의 자회사(지분 100%)로 편제됨에 따라 제②종전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이전받게 되어 새로이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제①종전법인이 2016. 5. 31. C사(=피합병법인) 주식의 100%를 취득하면서 C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제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은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새로운 과점주주인 제②종전법인 역시 이를 소유(의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므로, 제②종전법인이 2019. 1. 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과세대상이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은 제②종전법인이 그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제 취득한 부동산 등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대법원은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라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예규] 버추얼 휴먼·VFX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1104, 2023. 11. 23.

버추얼 휴먼사업 등("쟁점사업")은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지방세법 제 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약설(略說)]

- 버추얼 휴먼은 실존 인물이 아닌 3D 모델링 등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 인간을 뜻하는 용어이고, VFX(visual effect)는 특수영상이나 시각효과를 뜻하는 용어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림 등에 적용되는 영상제작기법 중 컴퓨터 그래픽을 바탕으로 둔 디지털 제작 기법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 제3호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중 하나로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쟁점사업이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관세법

[심판례] 청구법인이 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3관0048, 2023. 11. 1.

[사안] 국내고객이 청구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모델과 옵션을 선택하여 직접 차량을 주문하거나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여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을 주문하면, 최상위 지배기업(본사)에서 전기자동차(쟁점물품)를 생산하여 국내 배송하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함. 수입가격은 권장 소비자가격에 TP rate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바, 전기자동차가 운송되는 도중 또는 국내도착 이후 고객 및 옵션이 변경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소매판매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수입신고금액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변동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전가격)이 회계장부상 외상매입금·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계정에 반영되어 기록 관리되고, 실제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정산하지 않고 실현영업이익률이 목표영업이익률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후보상조정을 실시하기로 약정함. 처분청은 2019. 11. 20. 청구법인에 관세조사를 통지한 이후, 2022. 3. 2. 청구법인에게 무환수입물품의 사용·처분 제한에 따른 신고가격 부인·송품장 오류로 인한 저가신고 및 사후보상조정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후보상조정액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함. 청구법인은 2022. 4. 28. 처분청에 쟁점수정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22. 6. 8. 청구법인에 송품장 오류로 인한 저가신고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보함. 이에 청구법인은 2022. 11. 15. 처분청에 쟁점수정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함에 따라 2023. 3. 6.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쟁점차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쟁점차액의 발생은 회계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2015년 신설된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판매자와 수입거래 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OOO원장에게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ACVA)를 의뢰하거나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은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은 연도별로 사후보상조정을 통하여 이를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사후보상조정 결과 사후영수액이 사후지급액보다 많아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후지급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건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후지급액이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농후한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사후지급액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 등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약설(略說)]

- 2022. 12. 31. 부가가치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194호)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대폭 확대됨. 즉,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제270조), 가격조작죄(제270조의 2), 허위신고죄(제276조)로 세관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상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자료의 파기, 조작, 은폐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거에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등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상 범칙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네거티브 형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심판원은 'ACVA를 의뢰하지 않거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여부의 검토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함. 이는 법 개정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였으며, 납세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판단하였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된 법개정의 취지와는 사뭇 상반된 결정으로 보임.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박재현
S.Senio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주정연
S.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